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광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3일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지권, 정진철,  
최웅식, 추승우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안 제10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 ----- ----- -----.</p> <p>1.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제7조제1항 각 호에 <u>해당하는 사업</u></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